



목 차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법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2015. 12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I. 일반사항

1. 과업명	3
2. 과업기간	3
3. 과업목표	3
4. 유지보수 대상내역	3
5. 과업내용	3
6. 착수시 제출서류	4
7. 산출물·보고계획	4
8. 교육 및 기술지원	5
9.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6
10. 보안	7
1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7
12. 지연배상금	8
13.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8
14. 기타	9

II. 유지보수 세부내역

1. 예방점검	11
2. 정기점검	11
3. 장애복구	12
4. 유지보수인력의 운영·관리 및 차량지원	13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목록	15
[붙임 2] 업체대표 보안서약서	16
[붙임 3] 업체직원 보안서약서	17
[붙임 4] 보안확약서	18
[붙임 5] 유지보수 점검표	19
[붙임 6] 유지보수 일일점검표	20
[붙임 7] 장애처리일지	21
[붙임 8] 월 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	23

I. 일반사항

광진구청(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이하 “계약업체”이라 한다)는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과업명 :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과업기간 : 2016. 1. 1. ~ 12. 31.

가. 본 계약의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과업목표

가. 광진구에서 운영중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점검 및 운영관리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복구체계를 수립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한다.

4. 유지보수 대상

- 가. 유지보수 대상 이란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과 같다.
- 나. 유지보수 대상 외에 “발주처”가 추가한 장비와 기타 장치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에 의해 대상 장비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다.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 대상이 변경되더라도 5% 내 외의 증감금액은 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5. 과업내용

- 가. 유지보수업체(전문인력) 상주로 장애예방 및 즉각적인 장애 대처
- 나.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장애 진단·분석 및 복구
- 다.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
- 라. 유지보수 대상장비 H/W, S/W에 대한 성능진단
- 마.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기능 및 성능 개선 또는 재구성에 대한 기술지원
- 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자문

- 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전 등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 아. 광통신망의 구성 또는 환경의 변경시 필요한 경우 그 작업의 수행
- 자. 기타 “발주처”와 “계약업체”가 상호 합의한 사항

6. 착수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 ① 착수계 (계약 후 10일내 제출)
 - 용역수행계획서 1부.
 - 투입 유지보수요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 요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장애시 주요 부품 조달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 정기점검 계획 : 일자, 내용(H/W, S/W 등 점검사항 및 기준치)
 -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보강계획 : 장애처리, 성능관리 등 포함
 - 장애시 최단시간내 복구방안
 - 장애처리 참여조직, 체계, 업무분장 등
 - 중요 장비의 긴급조치 시나리오 포함
 - 보안활동 계획 : 점검툴, 참여인력, 예방활동 내용 및 컨설팅
 -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월) 각종 보고사항
- 회사대표명의 및 유지보수요원 보안서약서
 - ※ [붙임 2, 분임3]보안서약서 서식 참고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스템 중요장비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등
 - 계약시 제출했던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 하도급계약승인신청 관련 서류 일체

7. 산출물·보고계획

- 가. “계약업체”는 예방점검 또는 장애 조치 후 즉시 보고서를 담당자 확인 후 제출 하여야 하며 양식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산출물작성은 수기작성 또는 Tool 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Tool을 활용할 경우 계약사에서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산출물은 해당기간내의 합산·평균 등 통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포함할 수 없는 보고서는 제외한다.

라. 업무 수행 중 제출서류

제출시기	보고서종류	내 용
매월	정기점검보고서	○ 정기점검 항목 ○ 현장시설물 외관 및 파손여부
반기	현장보고서	○ 하우징 세척 / 사진첨부 ○ 시스템 정밀진단 보고서
수시	기타	○ 장애시 장애처리 보고서 ○ 솔루션 운영교육 및 보안교육

8.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업체”는 365일, 24시간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계획을 사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운영중인 장비의 H/W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발주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기간내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Minor Upgrade라 함은 제품의 기존버전에서 사용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사용자의 편의가 소폭 개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9.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가. 유지보수료라 함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업체”의 일체의 경비(부가세포함)를 말한다.

나. 본 계약체결 후 “계약업체”는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비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발주처”에게 이를 부담, 유지보수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내부직원의 고의에 의한 손실, 기타(화재, 침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장비 고장일 경우 우선복구 후 비용을 계상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단, 침수 및 낙뢰로 인한 시설물 장애(파손) 수리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는 침수(계기수용합체 방수성능) 및 낙뢰(서지보호기 및 누전차단기 성능)로 인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료 산정기간은 월 또는 분기단위로 하며 “계약업체”는 월 또는 해당분기의 말일까지의 용역수행(장애처리, 정기점검 등) 내용을 첨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처” 서면으로 유지보수비를 청구하며 “발주처”는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업체”에게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마.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1개월을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보 안

- 가. “발주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용역 수행을 통하여 취득 한 “발주처”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밀의 발설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다. “계약업체”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처”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마. “계약업체”는 전산통신실 또는 제한구역 출입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바.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와 유지보수요원에게 “발주처”의 기관이 시행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 “계약업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발주처”에 반환한다.
- 아. “계약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야. “발주처”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업체”는 감사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가.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다. “발주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지연배상금 사유가 발생하고 월 유지보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

- ② “발주처”은 “계약업체”의 계약위반 또는 업무 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정요구 사항이 조치(시정) 되지 아니할 때

12. 지연배상금

- 가. “계약업체”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24 × 복구지연시간
- 나.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지체일수

13.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 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발주처”는 “계약업체”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 발생 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발주처”가 실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① 특별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
 - ② 명백한 “발주처”에 의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장애
 - ③ 허가받지 아니한 자(제3자)에 의한 기기 보수 및 개조작업으로 인한 장애
 - ④ 한국전력공사의 사전 예고 없이 전주 이설 등으로 인한 장애
 - ⑤ “계약업체”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보수 또는 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 ⑥ “계약업체”의 책임한계를 넘는 “발주처”가 부대시설(전기시설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 나. “계약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책임규명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기 타

-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나. “계약업체”는 공급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보수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다. “계약업체”는 정보를 수집·가공하는데 있어 저작권법과 기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보수 업체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처”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청구·이의제기·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처”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처”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마. “계약업체”가 계약 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바.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유지보수요원,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로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사.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아. “계약업체”는 일부 용역에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및 해당 하도급업체의 소속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증 등을 제출하며,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에서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보고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자. “계약업체”는 사전에 통보된 유지보수 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교체 10일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차. 해당 업무에 참여하는 유지보수 요원은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유지보수 요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업체”는 해당 요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카.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만료 30일전 유지보수 품목별 인수인계 절차를 마련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다음 계약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 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법령, 예규를 적용한다.

II. 유지보수 세부내역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예방정비 및 장애처리 후 유지보수 활동 산출물으로써 장애접수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관리하고 유지보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점검

- 가.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CCTV시스템(H/W)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나.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예상 시점 30일 이전에 근거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예비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 가. 정기점검의 종류는 월간점검 및 특별점검(수시점검)이 있으며, 월간점검은 월 1회, 특별점검(수시점검)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나. “계약업체”의 요원은 월간 점검일지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다.
-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계약업체”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 마. “계약업체”는 점검 시 “발주처”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계약업체”는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청구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복구

- 가. 장애란 고장유무와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카메라 일체, Pole 일체(안내판, 베이스 포함))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외관상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나. “계약업체”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현장시설물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장애복구 조치시간

09:00~18:00	평일(18:00~익일09:00), 휴일	
평 일	평 일	휴일(토 일 및 공휴일)
즉시 처리 (현장도착 : 2시간이내, 장애복구: 4시간이내)	익일 처리 (현장도착 : 2시간이내, 장애복구: 4시간이내)	

- 라. “계약업체”는 장애발생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의 보수 및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수 및 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복구시간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계약업체”는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발주처”의 감독하에 실시 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계약업체”는 부품 및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 시에는 동 제조사의 동일품목인 신제품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품 및 장비가 단종된 경우에는 품질과 성능이 동등 이상 또는 상위 품목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사. “계약업체”는 장비의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 아.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요청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자. “계약업체”는 장애복구 시간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연시간만큼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 차. “계약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보수 체계를 확보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계약업체”는 협력사의 파업 등으로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유지보수체계 확보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현장시설물 일체의 외관상·기능상 원인을 알 수 없는(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교체 지원한다.

- 아. “계약업체”는 을지훈련 및 사이버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인적·물적으로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자. 유지보수 차량 1대를 요청시 지원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계약업체”가 부담한다.

4. 유지보수인력의 운영·관리 및 차량지원

- 가.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비상주요원 동급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업무명	등급	투입인원	자격요건
비상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로컬현장)	초급 기술자	1인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주요범위		어린이보호구역 CCTV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 나. “계약업체”가 선임한 유지보수인력은 “발주처”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유지보수상 요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라. “계약업체”는 선임된 유지보수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발주처”의 요청으로 야간 또는 주말휴일, 국가공휴일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성실히 연장 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계약업체”의 비상주유지보수요원은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사. “발주처”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이 기기의 내부수리 등 조작으로 발생한 장애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201 . . .

“발주처” : (인)

“계약업체” : (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대상 품목

□ 어린이보호구역 CCTV(99대) : 현장로컬 부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3메가픽셀카메라	130만화소	EA	60	
2메가픽셀카메라	200만화소	EA	39	
HOUSING(옥외용)	F/H 내장	EA	99	
SURGE PROTECTOR	영상, 데이터, 전원용	EA	99	
비상벨	옥외구조 ,Push Button방식	EA	99	
누전차단기	15A	EA	99	
파워앰프	20W	EA	99	
프리앰프	20W	EA	99	
Speaker	20W	EA	99	
외형함체	이중커버, SUS 1.2t	EA	99	
비상벨용 브라켓	SUS	식	99	
CAMERA POLE	6m(SUS) (Arm 용)	본	99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시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	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광진구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진구청 귀하

유지보수 점검표

2016년 월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장애점검							
점검일시		2016년 월 일 (: ~ :)					
점 검 내 역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점 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적 연결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장비별 운영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전체시스템 이상유무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결합, 기능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S/W 이상 유무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각 시스템 기능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기타 기기결합 등의 사항 :							
· 기타의견							
점검자		업체명 : 직 책 : 성 명 :					

유지보수 일일점검표

시설명	점검기기	점검 확인 내용	점검수량	점검결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현장설비	카 메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 렌즈 및 하우징 청소 - 모터, 체인 상태확인 및 청소 - Fan/Heater 동작상태 점검 		
	제어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상태 점검 및 조정 - 제어기 합체 내부 각종 컨넥터 상태확인 - 영상상태확인(모니터) - 코덱 자체기능 시험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지보호기 상태확인 및 청소 - 각종 케이블 상태확인 및 정리 (통신, 광케이블, 전원) - 제어기 합체 청소 - 접지저항 측정 - 비상벨 상태점검 및 청소 		
	구조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어기 합체 및 하부구조물 상태확인 및 청소 - 폴 외관상태 확인 (너트, 볼트, 피뢰침, 사다리) - 상부 브라켓 상태확인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 주변 장애물제거 (나뭇가지, 전선, 광고물,기타) - 기타 감시방해물 제거 등 		

장애처리 일지

용역명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장애처리일자	2016. . .
장애처리자	업체명 : 직위 : 성명 : (인)		
감독관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16. . . (), :
장애 신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장애내용 및 처리내역	<input type="checkbox"/> 장애내용 ○ ○ ○
	<input type="checkbox"/> 처리내용 ○ ○ ○
반출장비내역	○ ○ ○
기 타 사 항	

장애처리 현장 사진

점검일	2016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점검일	2016년 월 일	장 소		업체명	
점검결과 (특이사항)					
현장사진					

()월 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

○ 점검 및 유지보수기간 : 2016. . ~ . .

구 분	대상장비	정비완료	부품교체	미완료 및 미조치	비 고
관제센터					
현장 시설물					

- 주1) 정비완료 : 고장수리요구 또는 정기점검시 조치사항 기록
- 주2) 부품교체 : 고장수리요구 또는 정기점검시 부품교체내역 기록
- 주3) 미완료 : 고장접수후 정비도중 이월된 상태 / 미조치 : 고장접수후 정비 미시행 상태
- 주4) 일일점검일지를 참고로 월 점검 및 유지보수 보고서를 작성할 것
- 주5) 유지보수내역서 및 유지보수 현장사진 등 첨부할 것